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의 예외 규정 신설 〉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64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의 예외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일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의 예외 규정 신설

개정안은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허가 등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수 사용신고 대상으로서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u>
<u>④</u> · <u>⑤</u> (생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법¹⁾에서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서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수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하천수 사용자 중 일정량 이상 하천수를 취수하려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유량계)을 설치하고, 하천수의 사용 날짜, 사용량 등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리고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³⁾.

1)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3) **법 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구분	사용 용도(대상)	비 고
하천수 사용허가 (법 제50조)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환경개선 · 발전용수 등	허가신청 → 허가증발급 *기한 규정 없음
일시적 사용신고 (법 제50조의2)	소방 · 청소 · 비산먼지 제거 ·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	(사전)신고 → 신고수리 (5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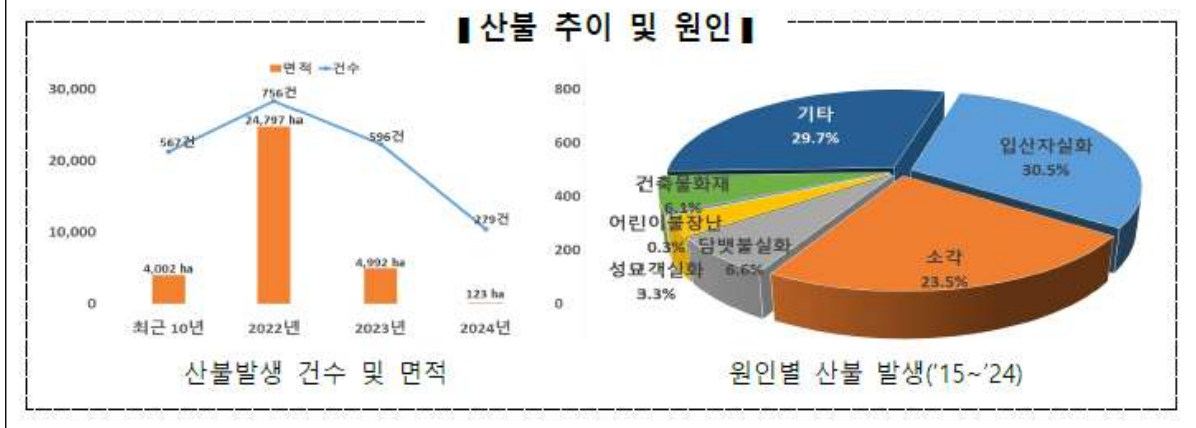
한편, 최근 국내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동시다발화하고 있으나⁴⁾, 현행법에서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화재·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 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여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형산불 발생 시 산림청·소방청·지자체 모두 산불 신고 후

4) 10년 전보다 산불피해 면적(7.8배), 대형산불(3.7배) 증가('2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림청)

-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피해 면적(7.8배), 대형산불(3.7배) 증가
- * 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년대) 857ha / 1.3건 → ('20~'24) 6,720ha / 4.8건
- 해외에서는 이상기후로 재난성 산불이 발생하여 국제적 이슈로 부각
- * 그리그(5,000ha 이상 피해, 2명 사망), 볼리비아(1,000만ha 이상 피해)



자료: 산림청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여 진화 및 구호활동을 하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⁵⁾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긴급히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

'25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각 홍수 통제소로 신고된 접수(처리)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허가 등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소방기관·방재기관 등이 긴급 재난 상황에서 현행법상 사용신고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담 없이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사용허가 등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량 관리의 중요성⁶⁾을 고려하여 사후에 사용 시기, 사용량 등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하천수 사용량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5) 신속하고 효율적인 헬기 운영을 위해 산림청과 소방청, 지자체 구분 없이 산불 신고 후 산불현장 도착까지 통합 골든타임제(30분)를 통합 운영 중(2025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2025년 1월, 산림청)

6) 수자원 총이용량(381억 m³) 중 하천수 사용량은 133억 m³로 35%를 차지하고 있음. 하천수는 공공 자원으로써 국민을 위한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 등 국민 생활의 이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하천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도 면밀한 하천수 사용량 관리가 필요함.

7)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헬기를 통해 '25년 산불(3.22~3.27) 당시 총 334회의 담수 및 835,000L의 물을 투하(소방청, 산림청 등은 제외) 하였으나, 사전·사후 사용량 보고는 없었음.

문 의 처

02)6788-5547
